

●고용노동부공고 제2026-169호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3월 18일

고용노동부장관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사업주 등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, 사업장 감독 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며,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,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고 기록하도록 하며,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·폭발,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,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며,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개정(법률 제 2215133호, 2026. 2. 19. 공포, 6. 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대상·방법, 공시항목 등 규정

- 1) 공시의무자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(안 제8조의2제1항)
- 2) 공시의무자는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기 전 대표자로부터 공시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,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(안 제8조의2제2항)
- 3)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(안 제8조의2제3항)
- 4)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공시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, 공시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(안 제8조의2제4항)

나. 명예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으로 정함(안 제23조의2)

다.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, 시기, 근로자 참여 및 공유 방법 등 규정

- 1)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 모든 유해·위험 요인을 파악하고, 파악된 유해·위험 요인이 허용 불가능할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·이행하여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함(안 제37조제1·2항)
- 2) 위험성평가는 사업 성립 후 작업 전에 실시하고, 이후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, 추가적인 유해·위험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개시·재개 전에 실시하여야 함(안 제37조의2제1·2·3항)

- 3) 사업장 순회 점검, 설문조사, 인터뷰, 기타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, 만약 참여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여야 함(안 제37조의3제1·2항)
 - 4)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및 파악한 유해·위험 요인, 수립한 개선대책, 개선대책의 이행 계획·결과, 근로자 작업 시 유의사항 등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(안 제37조의4)
 - 5)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담당자,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, 파악한 유해·위험 요인, 위험성 결정 내용, 개선대책 수립 내용, 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(안 제37조의5제1항)
- 라. 화재·폭발, 붕괴, 추락, 질식·중독,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중 재해의 정도·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재해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1조제3항)
- 마. 재해조사보고서 포함 사항, 공개 방법·절차 등 규정
- 1) 사업장의 개요, 재해 경위 및 조사내용, 재해 발생 원인,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재해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(안 제71조의2제1항)
 - 2)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, 범죄 혐의가 없어 내사 종결한 경우를 검사의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함(안 제71조의2제2항)
 - 3) 재해조사보고서는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등의 방식으로 공개함(안 제71조의2제3항)
 - 4) 고용노동부장관은 비공개 정보 심의를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할 수 있음(안 제71조의2제4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48)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
- 전자우편 : lee064@korea.kr
- 팩스: 044-202-8090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 → 정보공개 → 법령정보 → 입법·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(044-202-899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